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99,084,141	32,972,524
일반회계		947,211,178	28,416,335
특별회계		151,872,963	4,556,189
	공기업특별회계	98,382,703	2,951,4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911,702	1,107,35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317,686	1,509,53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153,315	334,599
	기타특별회계	53,490,260	1,604,708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951,586	58,548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832,810	84,98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10,430	123,313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17,318	84,520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36,000,000	1,080,000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78,116	173,343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8년도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8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267,134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201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10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